

정기안전점검 기술용역 변경계약서

계약자	관 리 주 체	(주)천수종합건설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주)명성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 131211-0010887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301호 ·대표자 : 김 선 무 ·전 화 번 호 : 031) 886-7422
계약내용	계 약 건 명	장남 3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변경전	총 액 일금 일천칠백육십만원정(W17,600,000)
		공 급 가 일금 일천육백만원정 (W16,000,000)
		부 가 가 치 세 일금 일백육십만원정 (W1,600,000)
	변경후	총 액 일금 이천이백만원정 (W22,000,000)
		공 급 가 일금 이천만원원정 (W20,000,000)
		부 가 가 치 세 일금 이백만원정 (W2,000,000)
	계 약 기 간 (변경전)	2021년 02 월 15 일 ~ 2021년 03 월 31 일(용역완료시까지)
	계 약 기 간 (변경후)	2021년 02 월 15 일 ~ 2022년 08 월 31 일(용역완료시까지)
	위 치	장남 3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가시설 설치구간(TS판넬:약250M)
	지 체 상 금 율	1000분의 1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1 년 월 일

(관리주체)

명 칭 : (주)천수종합건설

대표자 : 대표이사 한 상 우



(계약상대자)

명 칭 : (주)명성엔지니어링

대표자 : 대표이사 김 선 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상기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수종합건설 대표이사 정인호(이하 "천수종합건설"이라 칭함)와 ㈜명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선무(이하 "계약파트너"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총칙)

"천수종합건설"과 "계약파트너"는 본 계약서에 작성된 조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제 2 조 (목적)

본 계약은 "천수종합건설"이 필요로 하는 일정한 업무를 "천수종합건설"의 지시에 따라 "계약파트너"가 성실히 수행하고, "천수종합건설"은 계약금액을 "계약파트너"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정의) "기술용역"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 및 학술용역을 말한다.

제 4 조 (용역의 내용)

"계약파트너"는 "장남3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정기안전점검"을 본 계약서 및 그 부속문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고 "천수종합건설"은 그 결과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제 5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쌍방의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본 계약 체결 전에 "천수종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계약파트너"가 이미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하여는 본 계약을 소급 적용한다.

제 6 조 (과업의 범위)

"계약파트너"가 수행할 용역 범위는 "장남3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정기안전점검"을 성실하게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제)

아래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계약파트너"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천수종합건설"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파트너"는 "천수종합건설"이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파트너"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계약파트너"가 "천수종합건설"의 지시에 위배되게 업무를 수행할 때
3. "계약파트너"의 용역이행 태만으로 "천수종합건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때
4. "계약파트너"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계약파트너"가 제3자로부터 압류, 보전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 회생 또는 회사 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경우
6. "계약파트너"가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
7. "계약파트너"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8. "계약파트너"가 재정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이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 8 조 (계약변경 및 정산)

-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천수종합건설"과 "계약파트너"가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2) 정기안전점검비는 발주처에서 정산한 금액비율에 의해 정산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석)

- (1) 계약서 등 제반 서류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는 "천수종합건설"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천수종합건설"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 (2)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겨우 "천수종합건설"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소송법원으로 한다.

제 10 조 (대금의 지급조건)

-차수 공사에 따라 차수 준공 시 기성신청을 하여, 차수 준공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 11 조 (법규준수의 의무)

"계약파트너"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안의 의무)

"계약파트너"는 "천수종합건설"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의 관리 및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이를 업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야기 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파트너"가 그 법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천수종합건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진다.

제 13 조 (저작권 및 소유권)

"계약파트너"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보고서의 소유권은 "천수종합건설"에 귀속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 (1) "계약파트너"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천수종합건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천수종합건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 (2) "천수종합건설"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파트너"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경우 "계약파트너"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파트너"는 이에 동의 한다.

제 15 조 (하도급 및 채권 양도금지)

"계약파트너"는 본 계약에 대하여 "천수종합건설"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부분 하도급이나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 16 조 (성과품제출)

계약기간 내에 과업완료 후 "계약파트너"가 제출한 성과품이 "천수종합건설"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천수종합건설"의 요구에 따라 "계약파트너"는 용역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계약서의 보관)

"천수종합건설"과 "계약파트너"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천수종합건설"과 "계약파트너"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내 역 서(변경전)

■ 공사명 : 장남3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연번	공종명	규격	예정 일정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원)	비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1	식		16,000,000	부가세 별도
1	원당교						8,000,000	
1-1차	기초파일 (항타기)	기초, 천공 및 항타	2020년 10월	1	회	2,000,000	2,000,000	
1-2차	기초파일 (항타기)	기초, 천공 및 항타	2020년 10월	1	회	2,000,000	2,000,000	
1-3차	교대	동바리 및 거푸집	2020년 11월	1	회	2,000,000	2,000,000	
1-4차	옹벽	동바리 및 거푸집	2021년 04월	1	회	2,000,000	2,000,000	
2	원당3교						8,000,000	
2-1차	기초파일 (항타기)	기초, 천공 및 항타	2021년 03월	1	회	2,000,000	2,000,000	
2-2차	기초파일 (항타기)	기초, 천공 및 항타	2021년 03월	1	회	2,000,000	2,000,000	
2-3차	교대 A1	흙막이	2021년 03월	1	회	2,000,000	2,000,000	
2-4차	교대 A2	흙막이	2021년 03월	1	회	2,000,000	2,000,000	

변경내역서

■ 공사명 : 장남3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단위: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총 사 업 비		17,600,000	22,000,000	증	+	4,440,000	
도 급 액	공급가액	16,000,000	20,000,000	증	+	4,000,000	
	부가가치세	1,600,000	2,000,000	증	+	400,000	
	계	17,600,000	22,000,000	증	+	4,400,000	

■ 용역개요

- 당초 : 원당교 및 원당3교 정기안전점검
- 변경 :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설치공사(TS판넬:약250M) 정기안전점검(추가)

■ 변경내역

(단위:원)

연번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 가	금액(당초)	금액(변경)	비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1	식		16,000,000	20,000,000	증	4,000,000
1	원당교					8,000,000	-	-	-
1-1차	기초파일 (항타기)	기초, 천공 및 항타	1	회	2,000,000	2,000,000	-	-	-
1-2차	기초파일 (항타기)	기초, 천공 및 항타	1	회	2,000,000	2,000,000	-	-	-
1-3차	교대	동바리 및 거푸집	1	회	2,000,000	2,000,000	-	-	-
1-4차	옹벽	동바리 및 거푸집	1	회	2,000,000	2,000,000	-	-	-
2	원당3교					8,000,000	-	-	-
2-1차	기초파일 (항타기)	기초, 천공 및 항타	1	회	2,000,000	2,000,000	-	-	-
2-2차	기초파일 (항타기)	기초, 천공 및 항타	1	회	2,000,000	2,000,000	-	-	-
2-3차	교대 A1	흙막이	1	회	2,000,000	2,000,000	-	-	-
2-4차	교대 A2	흙막이	1	회	2,000,000	2,000,000	-	-	-
3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설치공사					0	4,000,000	증	4,000,000
3-1차	공사 초·중기	TS판넬(약250M)	1	회	2,000,000	0	2,000,000		2,000,000
3-2차	공사 말기		1	회	2,000,000	0	2,000,000		2,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임									